##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평의회 규정

전문개정 2014. 12. 11.

개정 2016. 11. 16.

개정 2017. 7. 3.

개정 2019. 3. 14.

개정 2019. 4. 29.

학칙개정 2021. 10. 1.

#### 제1장 총칙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칙」 제26조제7항에 따라 교수평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(학칙개정 2021. 10. 1.)
- 제2조(교수평의회의 구성) 교수평의회(이하 "평의회"라 한다)는 본교에 재직 중인 교원으로 제3조의 임원과 단과대학·대학원에서 선출된 평의원으로 구성한다.

### 제2장 임원

- 제3조(임원의 구성) 평의회에 의장 1명, 부의장에 남성 1명과 여성 1명으로 구성되는 2명, 사무처장 1명을 둔다.
- 제4조(임원의 선출) ① 의장은 전체교수회에서 선출하고, 부의장과 사무처장은 평의회의 협의를 거쳐 평의원 중에서 의장이 임명한다.
  - ② 의장의 세부선출방법은 따로 정한다.
- 제5조(임원의 임기)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정해진 선출 절차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  - ② 의장의 궐위시에는 남은 임기가 6개월 이상인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하며, 보궐로 인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- 제6조(임원의 임무) ① 의장은 평의회를 대표하고, 회의를 주재하며 평의회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.
  -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 - ③ 사무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평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.

#### 제3장 평의원

- 제7조(평의원의 자격) ① 평의원의 자격은 정년퇴임까지의 남은 근무기간이 2년 이상인 본교 재직 전임교원(교육공무원)으로 한다.
  - ② 학부(과)장·전공(프로그램) 주임교수 및 연구소장을 제외한 보직교수는 평의원이될 수 없다.
  - ③ 평의원이 사퇴하거나, 재임 중 6개월 이상 파견·휴직·연구년 및 휴가 등을 시행할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.
  - ④ 제3항에 따라 평의원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 평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.
  - ⑤ 연 1회 평의원의 당해연도 회의 출석률을 평가하여 50% 이하의 경우 의장은 평의원의 재선출을 요청할 수 있다.
- 제8조(평의원의 임기)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선거로 선출된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- 제9조(평의원의 선출) 평의원은 각 단과대학, 전문대학원 교수회에서 투표로 선출하며, 평의원의 수는 단과대학, 전문대학원 재적교원 15명당 1명으로 한다. 다만, 전문대학원 원은 통합하여 선출하며, 전문대학원 및 기초교육학부 등 파견교수는 원소속으로 한다. 또한, 평의원 중 여성 교수는 15% 이상으로 한다.

#### 제4장 회의

- 제10조(회의) ①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총장 또는 재적 평의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.
  - ② 교무위원은 평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, 평의회는 해당 교무위원에게 자료 제출, 출석 및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.
  - ③ 평의회는 재적평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.
  - ④ 평의회는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을 전체교수회의에 심의 요청할 수 있다.

#### 제5장 위원회

- 제11조(위원회) ① 평의회에는 운영위원회, 교무·학생 분과위원회, 기획·연구 분과위원회, 재정·복지 분과위원회 두며, 자문위원회,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.
  - ② 각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는 평의원으로 구성한다. 다만, 자문위원회 및 특별

위원회에는 평의원 외에 교내외 인사를 자문위원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.

- ③ 운영위원회는 임원, 교무·학생 분과위원회, 기획·연구 분과위원회, 재정·복지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구성하며,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의장이 된다.
- ④ 분과위원장은 의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궐위 시 평의원 중에서 의장이 임명하고,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- ⑤ 자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는 분과위원회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특별한 교내외 사안이 발생한 경우에 한시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.

제12조(위원회의 역할)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룬다.

- 1. 평의회의 조직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
- 2. 대학과 평의회의 각종 제도개선 및 발전에 관한 사항
- 3. 평의회의 각종 행사 및 대외적 활동에 관한 사항
- 4. 각 분과위원회에 대한 안건 배분 및 조정에 관한 사항
- 5. 전체교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
- ② 교무·학생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룬다.
- 1. 해당분과와 관련된 학칙 및 규정의 제·개정에 관한 사항
- 2. 교원 인사제도에 관한 사항
- 3. 전공학과의 설치 · 폐지 및 정원조정에 관한 사항
- 4. 그 밖의 본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주요 교내외 사항
- ③ 기획・연구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룬다.
- 1. 해당분과와 관련된 학칙 및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
- 2. 교수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
- 3. 대학의 중장기발전계획에 관한 사항
- 4. 그 밖의 본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주요 교내외 사항
- ④ 재정·복지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룬다.
- 1. 해당분과와 관련된 학칙 및 규정의 제·개정에 관한 사항
- 2. 교직원 복지 및 권익에 관한 사항
- 3. 대학 예산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
- 4. 그 밖의 본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주요 교내외 사항

제6장 운영

제13조(안건심의) ① 평의회는 다음 각 호의 교내사항을 심의한다.

1. (삭 제) (개정 2019. 3. 14.)

- 2. 「교육공무원 임용령」 제12조의 3에 따른 총장 후보자 선출절차에 관한 사항
- 3. (삭 제) (개정 2019. 3. 14.)
- 4. 총장이 학교운영에서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사항
- 5. 예산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
- 6. 별표 1의 교수평의회 심의대상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
- ② 평의회는 교외사항에 대해서는 심의사항의 제한 없이 의장 또는 평의원 5분의 1이상의 동의를 거쳐 심의할 수 있다.
- 제14조(심의절차) ① 총장은 교무회의를 통과한 안건 중 제13조 제1항 제2호와 제4호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평의회에 이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,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심의한다.
- 1. 의장은 운영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해당 분과위원회에 심의안건을 배당한다.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제2호의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.
- 3. 분과위원회로부터 심의결과를 보고 받은 의장은 평의회 전체회의에 심의 안건을 부의하며, 부의된 안건은 재적평의원 과반수의 출석(위임장 포함)으로 개회하고 출석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사안의 중요성·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서면으로 결의할 수 있다.
- 4. 의장은 평의회 전체회의(서면결의 포함)에서 결정된 심의결과를 심의요청서의 접수한 날로부터 10일(공휴일 제외)내에 총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, 이 기간 내에 심의결과를 알리지 않을 경우에는 심의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. 다만, 필요한 경우 협의에 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.
- ② 제13조제1항제5호의 예산편성 및 결산에 관한 심의는 "대학회계 세출예산 편성지침" 및 "세출예산 집행지침" 자료에 대한 심의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재정위원회의 평의원 참여로 나누어 다음 각 호에 따라 심의한다.
  - 1. "대학회계 세출예산 편성지침" 및 "세출예산 집행지침" 자료에 대한 사항은 제14조제1항의 절차에 따라 심의한다.
  - 2.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재정위원회의 평의원 참여와 관련하여 총장은 서울과학기술 대학교 재정위원회 일반직위원수의 4분의 1 이상의 위원을 평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으로 참여시켜야 한다.
  - 3. 총장은 세출예산 편성 또는 결산 심의를 마친 후 관계자로 하여금 평의회에 그 결과를 설명토록 하여야 한다.

- ③ 제13조제1항제6호의 별표 1의 평의회 심의대상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교무회의 통과 후 평의회에 그 구체적인 내용을 즉시 알려야 하며, 평의회는 통지된 사항 중 의장 또는 평의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에 의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안건이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심의한다.
- 1. 교수평의회가 총장으로부터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(공휴일 제외)이내에 총장에게 심의의사를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심의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.
- 2. 심의절차는 제14조제1항을 따른다.
  - ④ 별표 2에 해당되는 규정 등의 개정이 있을 경우에는 개정 전에 평의회에 개정 요지 등 주요사항을 알려야 하며 평의회는 이 규정 등의 개정과 관련하여 건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 제17조에 따른 안건발의를 할 수 있다.
- 제15조(교외사항의 심의절차) 평의회는 「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평의회 규정」 제13 조제2항의 심의요건을 거친 교외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심의한 다.
- 1. 의장은 운영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해당 분과위원회에 심의안건을 배당한다.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바로 제2호의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.
- 2. 운영위원회로부터 심의안건을 배당받은 분과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.
- 3. 분과위원회로부터 심의결과를 보고 받은 의장은 평의회 전체회의에 심의안건을 부의하며, 부의된 안건은 재적평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 사안의 중요성·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서면으로 결의할 수 있다.
- 4. 의장은 평의회 전체회의(서면결의 포함)에서 결정된 심의결과를 토대로 후속조치를 취하다.
- 제16조(안건발의) 평의회는 제13조의 심의사항을 포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총장에게 안건으로 발의할 수 있다.
- 제17조(안건발의 절차) 평의회는 「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평의회 규정」 제16조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의장 또는 평의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의절차를 거쳐 발의할 수 있다.
- 1. 의장은 운영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해당 분과위원회에 발의할 안건을 배당한다.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바로 제2호의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.
- 2. 운영위원회로부터 심의안건을 배당받은 분과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.
- 3. 분과위원회로부터 심의결과를 보고 받은 의장은 평의회 전체회의에 발의할 안건을 부 의하며, 부의된 안건은 재적평의원 과반수의 출석(위임장 포함)과 출석 평의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사안의 중요성·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서면으로 결의할

수 있다.

- 4. 의장은 평의회 전체회의(서면결의 포함)에서 결정된 발의안건을 총장에게 알린다.
- 5. 총장은 평의회에서 통지받은 안건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#### 제7장 재심의

- 제18조(총장의 재심의 요구) ① 총장은 평의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평의회로부터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(공휴일 포함) 이내에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.
  - ② 평의회는 총장의 재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(공휴일 포함) 이내에 이를 재심의하고 그 결과를 총장에게 알려야 한다.

#### 제8장 기타사항

- 제19조(평의회의 위원회 참석 및 의견청취 등) ① 총장은 대학인사위원회, 일반징계위원회, 연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전체 위원 중 2명 이상의 위원에 대해서는 의장이 추천한 사람으로 구성하여야 한다.
  - ② 의장은 평의회의 목적에 따른 제반 활동을 위하여 해당부서에 참고자료의 제출, 출석 및 답변을 요청하고 협의할 수 있다.
  - ③ 의장은 필요한 경우 의원으로 하여금 학교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할 수 있다.
  - ④ 학교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평의회 의원은 수시로 진행상황을 평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,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평의회로부터 전체의견을 받아 위원회에 제시하여야 한다.
- 제20조(예산지원) 총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평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- 제21조(사무처) ① 평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.
  - ② 사무처에는 간사를 둘 수 있다.
- 제22조(전체교수회 운영) 교무처장은 전체교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교수평의회와 사전에 일정 및 진행방법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.
- 제23조(규정 개정) 이 규정은 재적 평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가 찬성을 한 후에 개정할 수 있다.
- 제24조(평의회의 해산 및 재구성) 평의원의 일괄사퇴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평의회를 해산하고 관련조항에 따라 평의회를 새로이 구성한다.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다른 규정의 폐지) 「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평의회 운영규칙」은 폐지한다.

부칙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제389호, 2017. 7. 3.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제469호, 2019. 3. 14.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제472호, 2019. 4. 29.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 규정 제635호, 2021. 10. 1.) (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칙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〈별표 1〉 교수평의회 심의대상 규정

구분(분과)	규정명	비고
교무 및 학생	강사료지급규정 교수업적평가규정 교원인사규정 학사관리규정 교원성과급적연봉제운영규정 외국대학간 복수학위운영규정 성과급연구보조비지급심의위원회규정 일반징계위원회 규정 총장후보선정에 관한 규정	교무처
	상벌규정 장학생선정 및 지급규정	학생처
	계약학과 등 운영규정 연구교수규정	산학협력단
기획 및 연구	연구비관리규정 연구위원회 규정 연구비 감사위원회규정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규정	산학협력단
재정 및 복지	기성회예산편성위원회규정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	기획처
	공간관리규정	교무처
	규정심의위원회규정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규정	사무국

# 〈별표 2〉 교수평의회 통보대상 규정 등(개정 2017. 7. 3.)

구분(분과)	규정명	비고
교무 및 학생	교원의 사외이사 등 겸직허가에 관한 지침 조교인사규정 학생조교운용지침 전임교원 경력환산율 적용지침 성과급연구보조비지급지침 총장초빙공고 등에 관한 시행세칙	교무처
	외국인학생의 선발 및 지원 등에 관한 시행세칙	국제교육본부
	일반대학원 학사관리 규정 대학원공개강좌 운영규정 특수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전문대학원 학사운영규정	대학원
기획 및 연구	교육 및 행정시스템개편운영에 대한 시행지침	기획처
재정 및 복지	공간관리시행세칙	교무처